C - 64 - 2018

조적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편 제2장 작업장,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, 제7장 비계 규정 및 제2편 안전 기준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,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사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벽돌공사, 블록공사 등의 조적공사에 적용한다. (이 지침에서는 석재를 쌓는 조적공사는 제외한다)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조적공사"란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벽돌, 블록 등의 재료를 쌓아서 구조물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를 말한다.
 - (나) "규준틀"이란 조적벽체의 위치, 수직도 등을 정확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모서리, 중앙부 등에 설치하는 목재로서 건조하고 곧은 목재를 2면 이상 대패질하여 벽돌줄눈, 창문틀, 앵커볼트 등의 위치를 기입한다.
 - (다) "인방보"란 조적벽체의 출입구, 창문 등 개구부 상부에 설치하여 상부의 하중을 조적벽체 좌우로 분산시키는 철근·콘크리트, 석재, 철재 등의 보 부재를 말한다.
 - (라) "테두리보"란 조적조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(Slab)와 조적벽체를 일체화시켜 벽체상부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고, 하중을 벽체에 고르게 분포시킴으로써 조적벽체 전체의 강성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을 말한다.